

## 채 권 계 산 서

사 건 2000타경000호 부동산강제경매

채 권 자 〇〇〇

채 무 자 ◇◇◇

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사건 부동산에 20○○. ○. ○. 전입을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이므로 별지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오니 최우선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첨 부 서 류

- 1. 전입일자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
- 1. 임대차계약서사본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## 채 권 계 산 서

1. 판결금 : 금 12,000,000원

2. 이자 : 금 ㅇㅇㅇ원

금 12,000,000원×0.○○×○○○/365일(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연○

○%)= 금 ○○○원

3. 소계 : 금 ○○○○원(판결금 + 이자)

4. 집행비용 : 금 ○○○원.

합계 : 금 ㅇㅇㅇㅇ원(3+4). 끝.



제출법원	경매법원	제출시기	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기계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53조, 제84조
기 타	·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 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며, 이 경우에는 다시 채 권액을 보충하지 못함(민사집행법 제254조제2항).		
	·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 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 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		
	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,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그리는 지기는 이나기고 참 자이(데바이 2001, 2, 22, 서구, 00		
	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임(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다11526 판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